

제325회 정례회  
2013. 12. 20.(금)

# 심 사 보 고 서

-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  
행정문화위원회

# 「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2013. 12. 20.(금)

행정문화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김봉회 의원 외 6명

나. 제출일자 : 2013년 11월 29일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12월 4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12월 10일

-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봉회 의원)

### 1. 제안사유

○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제10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등의 주차료 감면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○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50% 감면함.(안 제5조제3항제2호).

### 3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문화전문위원 : 한철우)

- 금번 개정조례안은 「대기환경보전법」 개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주차료 감면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

#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봉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7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3년 11월 29일

발 의 자 : 김봉희, 김희수, 심기보  
김형근, 임 현, 정지숙  
김종필 의원

## 1. 개정이유
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제10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등의 주차료 감면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50% 감면함.(안 제5조제3항제2호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

나. 관련부서 협의 : 안전행정국 총무과와 협의함.

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 : 해당사항 없음.

(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제1항제7호”를 “제1항제9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50퍼센트 경감 :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(1000cc미만),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차량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5조(주차요금의 감면)</b>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<u>제1항제7호</u>에 따라 참석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관 부서장이 행사 1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주차료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총무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, 총무과장은 당일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조정, 승인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50퍼센트 경감</u> :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<u>경형 자동차(1000cc미만)</u></p>	<p><b>제5조(주차요금의 감면)</b>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제1항제9호</u>에 따라 참석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관 부서장이 행사 1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주차료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총무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, 총무과장은 당일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조정, 승인할 수 있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50퍼센트 경감</u> :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<u>경형 자동차(1000cc미만)</u>, 「<u>대기환경보전법</u>」 제58조제9항에 따른 <u>표지를 부착한 차량</u></p>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대기환경보전법

#### 제58조(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)

⑨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(標識)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.

⑩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는 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